

파워적립식패키지서비스약관 신규조문대비표 (2018.10.8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지급기간』이라 함은 적립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립목표가 달성된 후 제9조 제1항의 월정액 또는 이익금 등이 지급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적립식 서비스의 가입 신청) ① 고객이 적립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하나 이상의 계좌(이하 “적립식 서비스 계좌”라 한다)를 개설해야 한다. ② 적립식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은 서면 또는 회사홈페이지, HTS,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이하 “전자통신매체”라 한다)를 통하여 적립식 서비스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적립식 서비스 가입서를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u>적립대상자산/분산투자정보</u> 2. <u>적립방식</u> 3. <u>적립주기</u> 4. <u>적립기간/적립목표</u> 5. <u>지급방식</u> ③ 제2항에 의한 ----- ----- ----- ④ 고객은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ETF, 수익증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고객이 적립대상자산으로 수익증권 또는 ETF를 선택하는 경우 적립식 서비스 가입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다수의 종목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적립대상자산이 주식인 경우 고객은 한 개의 종목만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u>6. 삭제</u> 제3조 (적립식 서비스의 가입 신청) <u>① 삭제</u> ① 적립식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은 <u>서면</u>을 통하여 적립식 서비스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u>적립식 서비스 약정서를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u> 1. <u>적립대상자산/분산투자정보</u> <u>2. (삭제)</u> <u>3. (삭제)</u> <u>2. 적립기간/적립목표</u> <u>3. 지급방식</u> ② <u>제1항에 의한 -----</u> ----- ----- ③ <u>고객은 하나의 계좌에서 수익증권을 선택하여야 하며, 적립식 서비스 약정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다수의 수익증권을 적립할 수 있다.</u>	월정액 또는 이익금 지급방식 서비스 종료 서비스 가입방식 변경 적립방식, 적립주기 단일화 투자가능 금융상품 중 주식/ETF 제외

을 선택할 수 있다. 제4조 (적립대상자산 및 적립자산) ① 본 적립식 서비스에서 매매 가능한 자산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수익 증권 및 약정일 현재 회사가 유동성,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영업점,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한 주식, ETF로 한정한다. 다만, 제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수익증권 및 주식, ETF의 매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영업점 및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고 매매가 제한된 수익증권, 주식, ETF를 적립대상자산으로 신청한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 (적립방식) ① 고객은 적립금의 적립방식으로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1. 정액식 : 고객이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고객이 지정한 적립주기에 따라 적립 2. 지수연동식 : KOSPI 지수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산정된 적립금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적립주기에 따라 적립 3. 자유적립식 : 시기 및 금액 제한 없이 고객이 임의로 적립 4. 그 밖의 고객이 적립식 서비스 가입 시 지정한 적립방식 ② 고객은 CMS자동이체서비스 또는 자동대체서비스를 신청하여 별도의 출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출금계좌에서 적립식 서비스 계좌로 적립금 납입이 이루어진다. ③ 제2항의 경우 고객은 주가지수 수준, 담보용자이자 등을 감안하여 적립식 서비스 계좌에 납입될 적립금액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출금계좌에 충분한 예탁잔고를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자금 납입일에 지정출금계좌의 예탁잔고가 총출금액에 부족할 경우 해당 적립기의 자금납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4조 (적립대상자산) ① 본 적립식 서비스에서 매매 가능한 자산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수익 증권으로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적립방식 및 적립주기) ① 고객은 시기 및 금액 제한 없이 임의로 적립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형태로 적립한다. ② 고객은 CMS자동이체서비스 또는 자동대체서비스를 신청하여 별도의 출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출금계좌에서 적립식 서비스 계좌로 매월 지정일에 적립금 납입이 이루어진다. ③ 제2항의 경우 고객은 자금 납입일에 지정출금계좌의 예탁잔고가 총출금액에 부족할 경우 해당 적립기의 자금납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가능 금융상품 중 주식/ETF 제외 적립방식 단일화 적립금 납입일 관련 문구 추구 주가지수, 담보용자이자 관련 서비스 종료
--	--	--

제6조 (적립주기) <u>고객은 다음 각 호의 적립주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한다.</u> 1. 1개월 : 매월 지정일마다 2. 2개월 : 최초납입월 이후 2개월 단위 지정일마다 3. 3개월 : 최초납입월 이후 3개월 단위 지정일마다 4. 그 밖의 고객이 적립식 서비스 가입 시 지정한 적립주기 제7조 (적립대상자산 자동매수) ① <u>적립대상자산이 수익증권인 경우 회사는 적립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립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 납입된 적립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u> 1. -----제2항----- -----, 2. -----제12조----- ----- -----, 3. (생략) ② <u>적립대상자산이 주식, ETF인 경우 회사는 적립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립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 납입된 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u> 1. <u>고객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방법으로 적립대상자산에 대한 자동매수를 진행한다. 단, 자동매수주문 실행 시점에 납입된 현금이 적립대상자산의 최소매수단위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자동매수주문을 실행하지 않는다. 회사는 이 경우 자동매수주문이 실행되지 않았음을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고객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u> 2. <u>매 영업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계좌 내에 주문가능금액이 있을 경우 회사는 시초가 형성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에 전일종가를 지정가로 하여 자동매수주문을 하고, 종가형성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에는 시장가로 전환 매수주문을 한다. 매영업일 오전 6시 이후부터 장종료시까지의 추가입금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단일가 주문처리 된다.</u>	제6조 (적립주기) (삭제) 제6조 (적립대상자산 자동매수) ① <u>회사는 적립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립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 납입된 적립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u> 1. -----제1항----- -----, 2. -----제10조----- ----- -----, 3.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적립주기 단일화 자구 수정 투자가능 금융상품 중 주식/ETF 제외
--	---	---

한다. 다만, 고객이 주식 혹은 ETF를 적립대상자산으로 선택하는 경우 제5호의 지급방식이 적용된다. 1. 청산 : 적립을 중단하고, 적립자산을 현금화한 후 고객이 지정한 출금계좌로 일시지급 2. 자동재투자식 : 제1호의 청산에 따라 적립자산 일시지급 이후 고객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적립금을 조정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투자 3. 월정액지급식 : 적립을 중단하고, 적립자산을 현금화한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4. 이익금지급식 : 적립을 중단하고, 매월 이익금의 한도 내에서 일정금액을 지급 5. 청산반대 : 적립을 중단하고 적립자산을 현금화하지 않으며, 별도 지급 또는 재투자 없음 6. 그 밖의 고객이 적립식 서비스 가입 시 지정한 지급방식 <u>〈신설〉</u> ② (생략) 제10조 (적립자산의 자동매도) <u>① 적립대상자산을 수익증권으로 지정한 고객의 적립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립목표가 달성된 경우 회사는 적립식 서비스 계좌에 납입된 적립자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u>	<u>를 선택하여야 한다.</u> <u>1. 약정해지 및 전액환매 : 적립을 중단하고, 적립자산을 현금화 하며, 약정은 해지된다.</u> <u>2. 약정유지 및 전액환매 : 적립자산을 현금화 하며, 약정은 계속 유지된다.</u> <u>3. (삭제)</u> <u>4. (삭제)</u> <u>3. 약정해지 및 잔고유지 : 적립을 중단하고, 적립자산은 현금화 없이 유지되며, 약정은 해지된다.</u> <u>4. 약정유지 및 잔고유지 : 적립자산은 현금화 없이 유지되며, 약정도 계속 유지된다.</u> <u>5. (현행과 같음)</u> <u>② 지급방식 중 '약정유지'를 선택할 경우, 적립목표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약정이 유지된다.</u> <u>1. 적립목표를 '적립만기일' 또는 '저축기간'으로 지정할 경우, 적립목표 달성 이후 기존 저축기간만큼 연장된 적립만기일까지 분산투자매수가 된다.</u> <u>2. 적립목표를 '목표금액' 또는 '목표수익률'로 지정할 경우, 적립목표 달성 이후 기존 저축기간만큼 연장된 적립만기일까지 분산투자매수가 되지 않는다.</u> <u>③ (현행과 같음)</u> 제9조 (적립자산의 자동매도) <u>고객이 지정한 적립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립목표가 달성된 경우 회사는 적립식 서비스 계좌에 납입된 적립자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u>	투자가능 금융상품 중 주식/ETF 제외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설명으로 변경 월정액지급식 서비스 종료 이익금지급식 서비스 종료 지급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을 명확히 명시 자구 수정
---	--	---

1. 청산, 자동채투자식의 경우 회사는 적립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립목표가 달성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날 고객의 적립자산을 모두 매도한다. 2. 월정액지급식, 이익금지급식의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정기지급일에 현금화되도록 적립자산을 지정금액만큼 매도한다. 3. 제2호의 경우 매도대상자산이 다수일 때에는 고객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매도시점에 고객이 보유한 적립자산의 평가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립자산별 매도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매도주문시점과 체결시점 사이의 가격변동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4. 제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적립자산을 매도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영업점 및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환매 등의 조치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적립대상자산을 주식 또는 ETF로 지정한 고객의 계좌에 적립된 주식, ETF에 대해서는 매도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고객은 본인의 책임 하에 주식, ETF를 보유하거나 매도하여야 한다. 제11조 (예탁증권담보용자) ① 회사는 적립대상자산을 수익증권으로 지정한 고객이 신청하는 경우 예탁증권담보용자(이하 “담보용자”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주식 또는 ETF를 적립대상자산으로 지정한 고객에게는 담보용자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② 담보용자는 적립금으로 매수된 적립자산에 대하여 고객이 사전에 정한 용자비율에 따라 정기 적립일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담보용자금은 적립금으로 간주하여 자동매수자금으로 사용한다. 단, 기존에 적립된 적립자산이 없는 경우(최초 적립금 납입 시)에는 담보용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고객은 필요에 따라 용자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그 다음 영업일부터 반영된다. 또한 고객은 상환기일 이전에도 담보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현금 납입 또는 담보증권 매도를 통하여	1. ‘약정유지 및 전액환매’ 또는 ‘약정해지 및 전액환매’의 경우 회사는 적립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립목표가 달성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날 고객의 적립자산을 모두 매도한다. 2. (삭제) 3. (삭제) 2.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적립자산을 매도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영업점 및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하며, 고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환매 등의 조치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1조 (예탁증권담보용자) (삭제)	용어 변경 월정액지급식, 이익금지급식 서비스 종료 자구 수정 투자가능 금융상품 중 주식/ETF 제외 예탁증권담보용자 서비스 종료
--	---	--

상환할 수 있다. ④ 담보용자 기간은 적립기간의 만료일 또는 적립 목표 달성 시까지로 한다. ⑤ 담보용자 한도는 고객별 1천만원에 한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담보용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은 적립자산에 대해 담보용자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영업점 및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하며, 고객은 회사에 적립대상자산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감독에 의하여 담보용자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가 한도초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탁증권담보용자 서비스를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⑦ 고객은 담보용자금에 대하여 예탁증권담보용자 약관 별지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용자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제5조 제3항의 CMS자동이체서비스나 자동대체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용자이자를 정기적립일에 적립금과 같이 징구한다. ⑧ 출금계좌 내 현금 부족 등의 사유로 용자이자를 정기적립일에 징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예탁된 현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잔여 용자이자 다음 정기적립일에 고객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징구한다. 다만 미납된 용자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⑨ 적립기간이 만료되거나 고객이 지정한 적립목표가 달성된 경우 고객은 예탁증권담보용자금과 이자를 현금 납입 또는 담보증권 매도 등의 방법으로 상환해야 한다. ⑩ 그 밖의 임의상환, 담보징구 등 예탁증권담보용자와 관련한 사항은 예탁증권담보용자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중도입출금) ① (생략) ② 고객은 본인의 판단 하에 적립식 서비스 계좌의 적립자산을 매도하	제10조 (중도입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고객은 본인의 판단 하에 적립식 서비스 계좌의 적립자산을 매도하	예탁증권담보용자
--	---	-----------------

거나 적립금을 출금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해 담보유지비용이 예탁증권 담보용자 약관에서 정하는 담보유지비용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립자산의 매도 또는 적립금의 출금이 제한된다. 제13조 (주식, ETF 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① 주식, ETF 매매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세금 및 공과금은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② 회사는 적립식 서비스 약정 계좌에 대해 별도의 매매수수료를 적용하여 자동매수, 매도 시점에 부과한다. ③ 회사는 매매수수료 징수기준 등을 영업점, 온라인 매체 등에 게시하며 징수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점,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1개월 이상 게시하도록 한다. ④ 제3항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단, 기존 가입고객에게 변경전 징수기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사는 제4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내용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내용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약정해지)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적립식 서비스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 제19조 (생략)	거나 적립금을 출금할 수 있다. 제13조 (주식, ETF 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삭제) 제11조 (약정해지) 고객은 서면 또는 유선 등을 통하여 적립식 서비스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 제16조 (현행과 같음)	서비스 종료 투자가능 금융상품 중 주식/ETF 제외 약정해지 신청 가능 매체 변경
---	---	--

제20조 (약관의 적용) ① ~ ② (생략) <u>③ 적립대상자산이 수익증권인 경우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과 함께 적용된다.</u>	제17조 (약관의 적용) ① ~ ② (생략) <u>③ 적립대상자산이 수익증권이므로 '수익증권저축약관'과 함께 적용된다.</u>	자구 수정
--	---	-------